

2025학년도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즐기며 꿈을 가꾸는 익산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2025.3.20.



익 산 초 등 학 교

익산초 교육의 방향

1 교육비전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즐기며 꿈을 가꾸어 가는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배움을 통해 꿈을 가꾸는 학생	사랑과 열정으로 보람을 찾는 선생님	믿음과 소통으로 지원하는 학부모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

2 교육목표

교육목표	목표 내용	추구하는 인간상	본교인성 핵심가치	핵심역량
교육목표1 꿈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어린이	자주인	자기주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교육목표2 배움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움을 창출하는 어린이	창의인	창의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교육목표3 즐거움	자연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어린이	문화인	협력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교육목표4 나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민주인	공동체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3 학교 중점 교육활동

중점 교육활동	주요 내용	관련 가치
1. 건강한 신체놀이와 체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학 중 건강 체력 증진 교실 운영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동 *아침운동 신명나게! 아침운동 실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지역축제 참여 및 진로체험 	자기주도 협력
2. 꿈과 배움의 열정을 심어주는 학생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복지 중점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안심알리미, 학부모회) *학생 생활규정 실천 및 자치활동 강화 *안전 먹거리 중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다문화 교육 및 특수교육 강화 *한국어 학급 개설로 외국인 언어교육, 생활적응 집중 지원 	협력 공동체
3. 삶의 주인공이 되는 독서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읽어주는 선생님, 책과 함께하는 교실 *책과 놀자(온작품 읽기, 다양한 독서행사) *도서도우미, 명에서서 활동(학생,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학생, 교사) *책읽는 학교문화만들기 프로젝트 참여(아침10분 독서) 	자기주도 창의
4. 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산교육협력지구 사업 참여(책 읽어주는 교실, 농촌체험문화유산교육과정, 생태환경 등) *지역교사연구회 및 동아리 참여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매주 수) *동료장학(수업나눔) 강화 	협력 공동체

2025학년도 출결 처리 규정 안내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출석인정 결석-증명자료 제출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입양	학생 본인	20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출

-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결석 신고서 제출

-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마)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및 사전 미승인 교외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4) 기타 결석- 결석 신고서 제출

-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학년 수료

-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1/30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 3) 위의 2)항의 경우 당해 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관련

- 1) 기간 : 공휴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2) 내용: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실천중심 체험학습
-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 환산)
- 5)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전) 및 가정학습 신청(1일 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종료 후 면담 등을 통해 확인)

3 출결 처리 증빙 자료

구분	출결처리	출석부 증빙 자료
2일 이내 질병결석	결석	결석 신고서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	결석 신고서+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확인서) 등 해당기관이 발급한 증빙 서류
기타 결석	결석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경조사 결석	출석인정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교외체험 보고서 (연 15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	출석인정	가정학습 신청서+가정학습 보고서
법정 전염병	출석인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관련기관확인서, 확진 또는 격리확인서, 신속확인검사 확인서, 보건소 문자내용 복사본, 보호자 확인서 중 택 1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에 각종 양식 탑재

-신청서는 학교종이앱이나 종이 신청서로 제출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경조사 참가 신청(참여) 확인서 양식 활용하기

2025학년도 늘봄교실 안내

1 늘봄과정 운영 계획

1) 대상

- 맞춤형 프로그램 : 1~2학년 중 희망 학생
-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 1~6학년 중 희망 학생
- 선택형(돌봄)프로그램 : 1~2학년 중 희망 학생

2) 운영 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6년 2월 28일

구분	운영기간	비고
1학기	2025년 3월 4일 ~ 2025년 7월 24일	여름방학(맞춤형, 선택형(교육)) 2025년 7월 28일~7월 31일(4일)
		학습준비일(선택형(돌봄)) 2025년 7월 29일~7월 31일(3일)
2학기	2025년 8월 20일 ~ 2026년 2월 28일	겨울방학(맞춤형, 선택형(교육)) 2026년 2월 26일~2월 27일(2일)
		학습준비일(선택형(돌봄)) 2026년 2월 25일~2월 27일(3일)

(※ 학사 일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늘봄학교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시간표

(※ 강좌시간표는 학년별 시간표 및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간	월	화	수	목	금
오후늘 봄	13:10~13:50 (A/)	맞춤형 바둑,피아노, 뉴스포츠, 캘리그래피				맞춤형 바둑, 종이공예 피아노, 뉴스포츠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14:00~14:40 (B/A)	맞춤형 바둑,피아노, 뉴스포츠, 캘리그래피	맞춤형 세계 전래놀이, 주산암산,창의과학 보드게임	맞춤형 종이공예 창의과학,주산암산 캘리그래피	맞춤형 보드게임,주산암산 키즈원에 세계전래놀이	맞춤형 바둑, 종이공예 피아노, 뉴스포츠
		선택형(교육) 창의수학,영어	선택형(교육) 피구,토탈공예	선택형(교육) 로봇과학,영어	선택형(교육) 로봇과학,토탈공예,	선택형(교육) 창의수학,영어,

		창의독서,창의과학 컴퓨터1	피아노	피아노, 컴퓨터2	피아노,컴퓨터2 피구	창의독서,창의과학 컴퓨터1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14:50~15 :30 (C/B)	선택형(교육) 창의수학,영어 창의독서,창의과학 컴퓨터1	맞춤형 세계 전래놀이, 주산암산,창의과학 보드게임	맞춤형 종이공예 창의과학,주산암산 캘리그래피	맞춤형 보드게임,주산암산 키즈원에 세계전래놀이	선택형(교육) 창의수학,영어, 창의독서,창의과학 컴퓨터1
		선택형(돌봄) 단체활동	선택형(교육) 피구,토탈공예 피아노	선택형(교육) 로봇과학,영어 피아노,컴퓨터2	선택형(교육) 로봇과학,토탈공예, 피아노,컴퓨터2 피구	선택형(돌봄) 단체활동
	15:40~16 :20 (/C)	선택형(교육) 창의수학,영어 창의독서,창의과학 컴퓨터1	선택형(교육) 피구,토탈공예 피아노	선택형(교육) 로봇과학,영어 피아노,컴퓨터2	선택형(교육) 로봇과학,토탈공예, 피아노,컴퓨터2 피구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단체활동	선택형(돌봄) 단체활동	선택형(돌봄) 단체활동
	16:20~17 :30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선택형(돌봄) 개별활동

순	맞춤형 프로그램명	강사명	수업 요일	운영시간			수강료(월)	수강인원
				학년	A타임	B타임		
1	바둑	전희정	월,금	1~2학년	1:10~1:50	2:00~2:40	무료	타인 별 20명 내외 (최대 22명)
2	뉴스포츠	강경무	월,금	1~2학년	1:10~1:50	2:00~2:40	무료	
3	세계 전래놀이	방보영	화,목	1~2학년	2:00~2:40	2:50~3:30	무료	
4	피아노	김은정	월,금	1~2학년	1:10~1:50	2:00~2:40	무료	
5	보드게임	이은아	화,목	1~2학년	2:00~2:40	2:50~3:30	무료	
6	생활과학	노경아	화,수	1~2학년	2:00~2:40	2:50~3:30	무료	
7	키즈 원예	최명선	목	1~2학년	2:00~2:40	2:50~3:30	무료	
8	종이공예	이영희	수	1~2학년	2:00~2:40	2:50~3:30	무료	
			금	1~2학년	1:10~1:50	2:00~2:40		
9	캘리그래피	김진선	월	1~2학년	1:10~1:50	2:00~2:40	무료	
			수	1~2학년	2:00~2:40	2:50~3:30		
10	주산암산	김인숙	화,수,목	1~2학년	2:00~2:40	2:50~3:30	무료	

순	선택형 프로그램명	강사명	수업 요일	운영시간				정원
				학년	A타임	B타임	C타임	
1	창의과학	노경아	월,금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2	창의독서	김한나	월,금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3	컴퓨터1	성영애	월,금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4	토탈공예 (구 미술2)	이난이	화,목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5	로봇과학	이 현	수,목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6	창의수학	이은아	월,금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7	컴퓨터2	김용희	수,목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8	피구 (구 성장체육)	강경무	화,목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9	영어		월,수,금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10	피아노	김은정	화,수,목	1~6학년	2:00~2:40	2:50~3:30	3:40~4:20	60명

- * 내부강사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늘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규정에 준하여 적용
- * 늘봄학교 수강료 지원금 예산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음
- *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별 시정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이 없을 시 운영 타임은 조정될 수 있음

4)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학기 중	월	화	수	목	금
13:00-14:00	출석 확인 및 인사 나누기, 개별 과제활동(생활안전지도)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출석 확인 및 인사 나누기, 개별 과제 활동(생활안전지도)
14:00-15:00	간식 및 정리 정돈, 자율 활동				
15:00-16:00	(단체 활동) 창의력 활동 및 안전교육				
16:00-16:30	(개인 활동) 신체놀이, 교구활동, 독서 활동 등				
16:30-17:30	정리 정돈 및 생활 지도, 귀가 준비 및 귀가				

방학 중	시간	월	화	수	목	금
종일반	9:00-9:30	오전반 출석확인 및 책임기				
	9:30-11:30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및 자유선택 놀이활동				
	11:30-12:30	점심식사 및 안전생활 시청하기				
	12:30-13:00	양치질 정리정돈 (오전반 귀가)				
	13:00-13:30	오후반 학생 인사 및 출석 확인, 자유 활동, 독서활동, 보드게임				
	13:30-14:30	단체활동(만들기, 생활안전지도)				
	14:30-15:30	간식 및 휴식, 자유 활동				
	15:30-17:00	개별 창의 미술활동 및 교구활동, 안전 귀가 지도 및 교실 정리 정돈				

2 기대효과

-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 다.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 라.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회계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 1) 수강료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비,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로 구성된다.
- 2)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별로 징수한다.
- 3) 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교재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계획 심의를 받는다.
- 4) 강사비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청구 시 지급한다.

나.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않음

▶ 학교의 행사, 공휴일, 휴업일, 방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 및 보강하지 않으나, 강사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할 경우 보강(시간나누기 보강불가) 또는 환불해야 함.

▶ 이미 구입한 교구, 교재, 재료비는 환불에서 제외한다.

▶ 방과후 운영은 월단위로 한다.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실제 수강 가능한 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한다.(예: 4.3시간 → 5시간)

▶ 환불금액 100원 미만은 절삭한다.(예: 9,760원 → 9,700원)

▶ 학적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입원, 질병 등) 등의 사유발생시도 위에 따른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익월 첫째주에 환불업무를 실시한다.

▶ 소액 환불: 수익자 부담 경비는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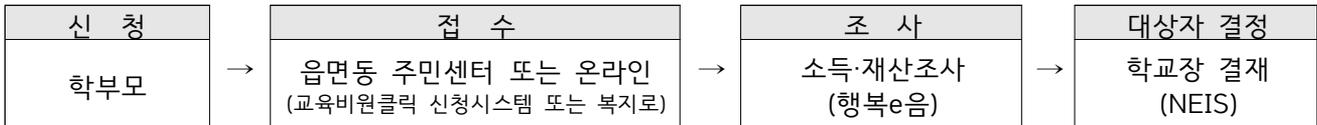
다. 자유수강권 지원

- 1) 지원 목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2) 지원 방법: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선택형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3) 지원 대상 및 순위

순위	구분	내용
1	우선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2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의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20%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등 신취약계층 추가 지원 시 25%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4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 다문화 각각 지원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까지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까지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4)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에게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5)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6)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 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 중지
*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

4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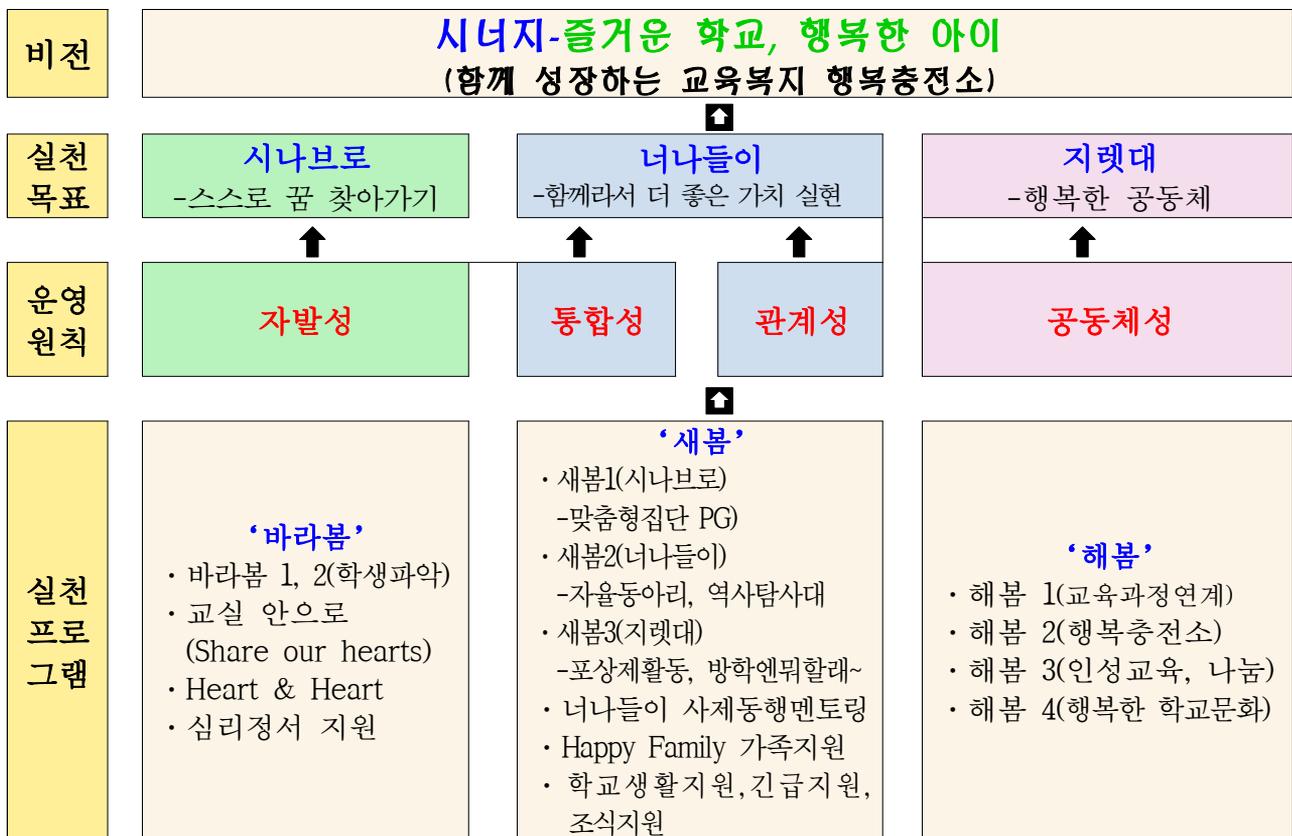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평가 시기	평가자
프로그램 공개	○ 프로그램 준비,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운영 효과 - 프로그램별 1회 이상 프로그램 공개 실시(10월 4주) 예정 ○ 활동 통지표 발송(7월 1주, 1월 2주) 예정	연1~2회	교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7월 1주, 11월 2주) 예정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연1~2회	학생 학부모 교사
자체 점검·평가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 모집 및 학습 계획 운영 전반 등	학년말	담당자 교감

2025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운영 중점방향

- ‘즐거운 학교, 행복한 아이’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충전소(시너지)
- 시나브로-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꿈을 찾아 성장하는 자발성 프로그램 지원
- 너나들이-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라서 더 좋은 교육복지 가치 실현
- 지렛대-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꾸는 공동체로 서로서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꿈이 자라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꿈자람’ 교육복지 비전 및 운영방향】



2 추진 과제 설정

- **바라봄-학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면담(학생, 학부모, 교사)을 통한 학생 파악 및 대상 학생 종합적 이해
 -학생 파악을 기반으로 대상 학생 특성(발달상황, 문제행동, 가정환경, 욕구와 강점)에 따른 개별 지원계획 수립,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교실안으로~’ 교육복지 교육활동 및 교육복지 이해 교육으로 학급의 특성 파악 및 대상 학생들의 학급에서의 역동성과 관계성을 파악
- **새봄-시너지(시나브로·너나들이·지렛대)로 행복한 학교생활의 토대와 자기주도적 효과 증진 [시나브로]**

- 학생의 심리정서적 마음들여다보기를 통한 종합검사 및 심리상담 치료
- 학생의 문제 및 특성을 반영한 학년군별 집단 프로그램 운영
- 문제 유형 밀집된 학년 집중 집단프로그램 운영(3, 4학년)

[너나들이]

- 너나들이 사제동행 멘토링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 학생의 욕구와 강점을 활용한 탐방 활동 및 학생 자발적 동아리 연속적 운영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역사 탐사팀 3기, Book-돋움 인문학 동아리 3기)
- 사제동행 자율 동아리(인문학동아리, 피포페인팅, 봉사동아리, *같이의 가치(신설)* 등)의 학생 중심 활동 운영 확대와 교육복지프로그램 교사 참여 확대(자율 동아리 지도교사)로 복지 문화 정착

[지렛대]

- 학생을 둘러싼 가정환경을 들여다봄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FAMILY empowerment 지원
- 아침결식아동 조식지원으로 학습활동 집중력, 학교생활 적응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
- 자기 효능감 및 성취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기회 마련
- 학생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활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토대와 자기 주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해봄-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운영으로 교육 기반 구축 확대**

- 동학년 협의회와 교육과정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협조 및 지원(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한 학년별 인성교육 및 예방 교육)
- 또래관계나 감정조절 등 어려운 학생이 밀집된 학급 내 성장학급 지원(행복충전소)으로 행복한 교실 문화 형성
- 학생 자기 주도 참여 '라운제나' 이벤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조성

○ **교내 교육복지 추진체계 활성화와 학생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학교 교육복지 문화 조성**

○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선도학교 신청으로 통합지원 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

○ **지역사회기관 연계 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의 공동체 문화 조성 활동 강화**

3 주요 활동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학생파악	‘바라봄’ 프로젝트	학생 파악 및 발굴, 학생 면담, 교육복지 교육, 가정방문	상시
맞춤형지원	‘새봄’ 프로젝트	사례회의, 너나들이 사제동행멘토링, 상담	연중
		맞춤형 집단프로그램 - 또래관계향상, 학습흥미향상, 사회성향상, 자아존중감향상	학기 중
		방학엔 뭐 할래~, 성장프로젝트, JUMP-UP포상제활동	
		◆역사탐사대 3-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적지 탐방(전북권) ◆자발적 학생자율동아리(5개) -BOOK돋움-인문학동아리 -피포페인팅-예술동아리 -휴먼브릿지-봉사동아리 -포토포엠-사진동아리 -같이의가치-만화동아리 등	
		해피패밀리 가족지원-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등	
		학교생활지원, 긴급지원, 조식지원	
환경조성	‘해봄’ 프로젝트	교육과정연계 프로젝트활동(전래놀이활동, 다도예절교육) 인성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세계시민교육, 나눔교육, 쌀나눔운동) 성장학급지원(행복충전소) 행복한 학교문화조성(행복플러스공연, 빅스타제 등)	학기 중
운영지원	‘꿈자람’ 교육복지	협의회 및 쉼터 운영, 지역사회기관연계	연중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가치관 형성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복한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배려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1 부모와 함께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또래 친구끼리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은?

- 가.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밴드 등 SNS로 보냄
 - 나.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함
 - 다. 장난하는 척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는 행위
 - 라. 장난하는 척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위
 - 마. 외모에 대한 별명을 지어서 놀림
-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이며 처벌 대상임을 기억합니다.

3.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성에 대한 느낌과 가치관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 하는 모습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마. 위험 상황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 바.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사. 부모님은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가 피해자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구분 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유형

<p>» 디지털성범죄 유형</p> <p>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p> <p>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p> <p>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 (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여 성적으로 이용)
---	--

2.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려주세요.

- ①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몸 사진 혹은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 ②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체 사진을 누군가와 공유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협박받을 때
- ③ 누군가가 나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 ④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고, 내가 그것에 압박감을 느낄 때
- ⑤ 누군가가 나에게 성관계에 대해 말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 ⑥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할 때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학교, 사는 곳, 메신저 ID)나 나의 사진/영상을 보내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세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양성평등에 관하여

1 양성평등 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2 자녀에게 양성평등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1.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워야 한다.

2.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3.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남아는 운동과 칼싸움, 여아는 소꿉놀이와 고무줄 등 성에 따라 놀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난감, 학용품을 사줄 때는 부모의 편견 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를 파악한다.

: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은 없는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 한다.

5. 집안일은 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사와 육아 부분이 가장 크다. 아빠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흡연예방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호기심으로 인한 한 두 번 짬의 흡연을 조기에 막지 못하면 청소년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2025학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간접흡연이란?

- ◎ 본인이 직접 흡연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합니다.
- ◎ 간접흡연에 노출 시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폐암 발생 위험이 20~30% 증가합니다.
- ◎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중이염, 기침, 쌉쌉거림,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기능 부전, 감염을 포함한 하기도 증상, 그리고 신생아에서의 저체중아 출산, 유아급사망증후군의 원인이 되며, 그 밖에도 뇌종양, 림프종, 백혈병, 천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3차 흡연이란?

- ◎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 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흡연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연구회

6 법정 감염병 기본 원칙

- ▶ (개인위생수칙) 비누로 손 씻기, 창문개방 환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면역향상을 위한 노력
- ▶ (유증상자 관리) 법정 감염병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등교 여부 상의
- ▶ (교내 확산방지) 수시로 방역관리하며, 확진자를 등교 중지하여 교내 확산 방지

7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등교중지 근거>

·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① 병원진료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 ② 가정에서 휴식(등교중지 - 전염 예방을 위해 학원도 가지 말 것)
- ③ 완치 후 **병명과 격리기간, 감염병 여부** 등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학교로 제출(해당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됨)

2. 흔히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
- 학령기에 걸리기 쉬운 감염병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 및 질병 상황 변화 가능)

병명	초기증상	등교중지 기간
수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 까지(약5일)
홍역	발열, 발진, 구강점막에 좁쌀모양 흰점	열이 내리고서 3일까지 (발진 후 4일까지)
유행성이하선염	발열, 귀밑 부어오름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증상 발생후 5일까지)
유행성각결막염	충혈, 눈부심 안구통증	격리 없이 개인 위생철저 (의사 소견에 격리가 필요 할때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발바닥·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인플루엔자	고열, 근육통, 기침, 콧물 등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약 5일)
코로나19	38도 이상 고열, 호흡기 증상	5일 등교중지 권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SNS의 발달로 피자 한 판 가격으로도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스’ ‘작대기’, ‘캔디’ 등의 친숙한 은어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같은 특정 SNS에서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이모티콘’을 암호화하여 마약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사용 습관을 주시하고 점검해주세요.

1. 최근 발생한 10대 마약 사건

- ▶고등학생 3명이 범행을 공모하여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
- ▶충북 음성군 10대(18세) 집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환각 버섯’을 집에서 재배해 캡슐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다 적발
- ▶2022년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



2. 어떻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 마약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마약은 이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중 하나가 돼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곧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SNS)

▶ 마약을 경험하게 되는 공통점을 주목!

청소년의 마약 구매 이유는 대부분 ‘호기심’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는 필수입니다.

마약이나 마약성 약물 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긴급범죄 신고전화(112)로 꼭 신고하고, 중독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로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 : 1899-0893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상담, 편지/PC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부부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

< 가정폭력의 유형 >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모두 포함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폭언하기, 물건을 파손, 때리게 만들었다며 폭력을 정당화하기 등

고립

상대방을 고립 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어디에 있는지 장소 추적하기, 모든 결정권 박탈하기, 하인처럼 취급하기 등

협박

자살하겠다고 위협 하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 눈빛/행동/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때리는 것만이 가정폭력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여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지는 않았나요?

남성적 특권 이용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본인 혼자하기 등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때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배우자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 처분하기, 생활비 지출을 보고 요구하기 등

원치않는 성관계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하기,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하기 등

방임

무관심, 위험 상황 (병원에 가야할 일)에서 방치하기, 냉담한 태도 등

2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2. 정서학대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4. 방임, 유기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3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징후 및 신고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상처 ● 다친 시기가 제각각인 상처 ● 오래된 상처 치료 ● 임신 중의 다친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격리시킴 ● 신체 상처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 옷, 몸무게, 청결상태 등 신체적 차림에 이상이 나타남 ● 빈번한 짜증, 충동적 행동 ● 비관적인 말, 두려움, 혼란 등의 표현 ● 자기 비하 ● 직장의 잦은 결근, 결근의 이유 설명하지 못할 ● 직장에서의 작업능률이 떨어짐 ● 집중력 저하 및 잦은 실수 ● 술, 약물 의존 ● 자살이나 살인의 욕구 표현 ● 갑작스런 두통, 식욕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화상자국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골절 ● 입, 눈 상처 ● 성장장애, 언어장애, 신체발달 저하 ● 성병 감염, 임신 ● 성기 및 항문 상처 ● 영양상태 불량,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자살 시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해박하고 조속한 성 지식 ● 주의집중장애, 비행, 기출 ● 잦은 결석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신고 및 지원기관

☎ 11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고소접수, 수사 등) ☎ 119 (의료적 치료)

☎ 1366 (여성긴급전화)

☎ 1577-9337(건강가정지원센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대처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청소년 자살의 특징

- 발달 단계 특성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이다.
-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
-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2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오해)과 진실

✖ 대부분의 자살은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이다.

⊕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 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암시한다.
선불리 판단하거나 흔계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죽을 거야.” 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자살의 단서(위험 경고)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인 사람은 이러한 단서를 보이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이런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어적 단서(대화, 일기, 낙서 등)	행동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라져 줄게. ✓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 이젠 정말 끝이야. ✓ 아무 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내가 보여 줄거야. 만족하길 바래. ✓ 엄마, 아빠 "미안해." ✓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행동 변화, 활동 수준 증가 또는 감소 ✓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 ✓ 소중한 물건이나 받았던 상장 등을 버리기 ✓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 ✓ 용건 없이 불속 연락해서 "잘 지내라."고 이야기 함 ✓ 섭식 행동의 장애 -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 수면 형태의 변화 ✓ 단정치 못한 외모 ✓ 갑작스런 기분 향상-불안해하던 아이가 평화로워 보임

4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

개 인	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 ❖ 감정을 통제하며 적절히 표출하기 ❖ 주변에서 적절한 조언 구하기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하기 ❖ 자신에 대해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지지 ❖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 결속력 ❖ 자녀의 장점을 찾아주고 격려하기 ❖ 좋은 양육 환경과 태도

5 자살에 관한 도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상담 전화

- | | |
|-----------------|--|
| 한국생명의 전화 | www.lifeline.or.kr/1588-9191 |
|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 www.suicideprevention.or.kr |
| 사랑의 전화 | www.counse124.com/1566-2525 |
| 한국청소년상담원 | www.kyci.or.kr/739-2000 |

장애 인권 교육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31)

<p>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p> 	<p>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권리구제를 위한 벌칙>

차별성,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2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 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3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성폭력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 사이에도 성립됩니다. 장애 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성폭력의 특징

- 폭력 피해 중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의 비중이 크다.
- 성폭력과 친밀감의 구분이 어려워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다
- 피해유형에 있어 근친 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으며, 친족이나 이웃, 시설종사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다.
- 일상생활과 성 발달이 비장애인과 다름없고 애정과 인정욕구가 많으며 표현이 가능한 3급의 경도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의 주 대상이며, 발견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피해가 이루어진다.
- 피해 상황 진술 시, 신체적 장애나 인지적 결함으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주 피해 연령은 중고등학생이지만 그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 방침

1.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2.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3. 학생, 학부모와의 수시 상담 활동을 통해 위기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한다.
4.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운영한다.
5. 인권 존중, 배려, 봉사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6.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7.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6차시 이상 실시
- 국어, 도덕, 사회, 통합 등 관련 교과 수업 최대한 활용
-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폭력 예방,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실시

2.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사이버상 공감 · 의사소통 등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및 예방 교육 실시

영역	추진 과제	대상	목표	담당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학생 ·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온 · 오프라인 교육 및 안내장 발송 •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 즉시 개입 지원 • 1~6학년 사이버 어울림 수업 실시 / 연간 2차시 	1~6	수시	업무 담당자 담임
언어문화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활동 강화 -친구사랑 및 언어문화개선주간(3,9,10월) 운영 -캠페인, 공모(표어, 글짓기 외) 등 행사 운영 • 학생 · 학부모 · 교사 대상 언어문화개선 교육 -교육과정설명회, 안내장 등 활용 	전교원 1~6	학기별1회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계획

가. 구성: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2명

나. 역할

- 1) 사안접수 : 신고접수대장 기록,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 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교사 포함) 분리(최대 7일 이내)
- 3)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심의 : 소속학급 내 자리 배치 변경 등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 4)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등
- 5) 사안보고 : 관할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 보고(중대사안은 즉시 보고)
- 6)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최대 3주 이내(경미한 사안 요건 심의 등)
- 7)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6호·7호 조치 여부 심의
- 8) 졸업 직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 9)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4. 사안조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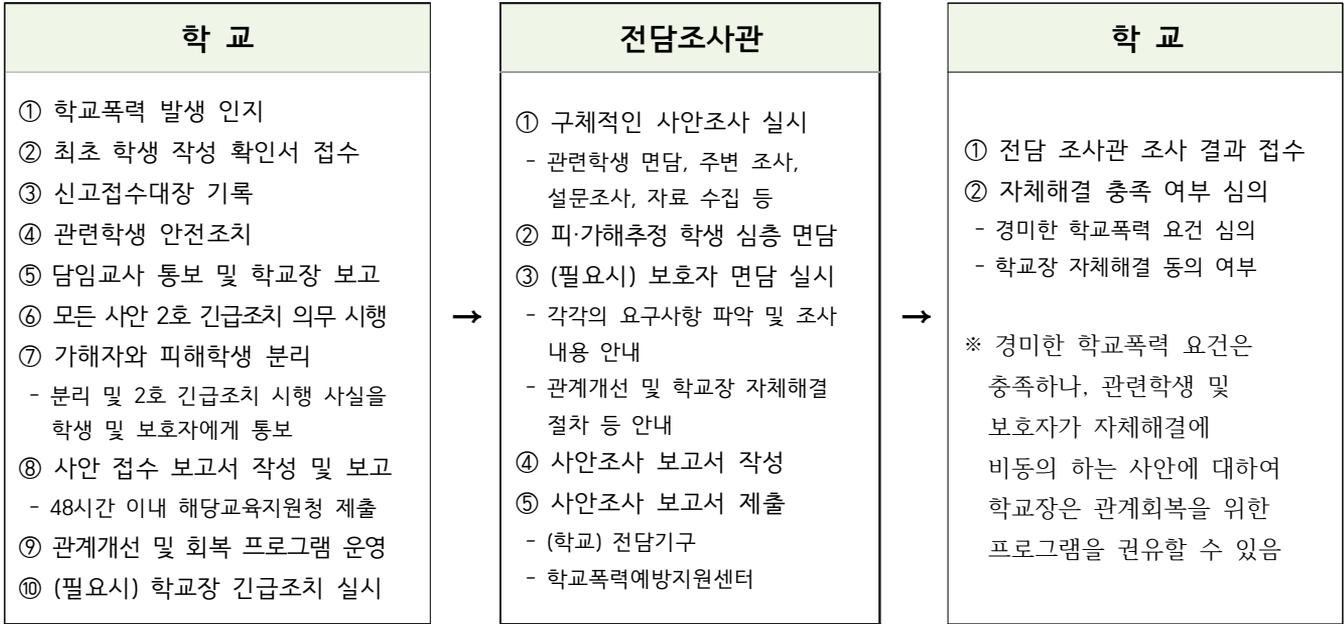
가. 확인사항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조사 :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확인서 확보(피해, 가해, 목격학생), 보호자 의견서(선택) ▶ 정보수집 : 관련학생 정보, 폭력 유형, 발생장소(기간, 원인), 피해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 설문조사 실시, 증거자료 수집(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등),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정황파악 : 관련학생 대처능력(상황), 적응능력, 힘의 불균형 여부 등을 파악
요구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파악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확인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⑧ ▶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갈등, 쟁점 사항 등) ※ 사안과 관련된 보고서 등은 직접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조사관은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학교(전담기구) 및 (지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 제출(보고)
자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공문) ※ 관계기관 :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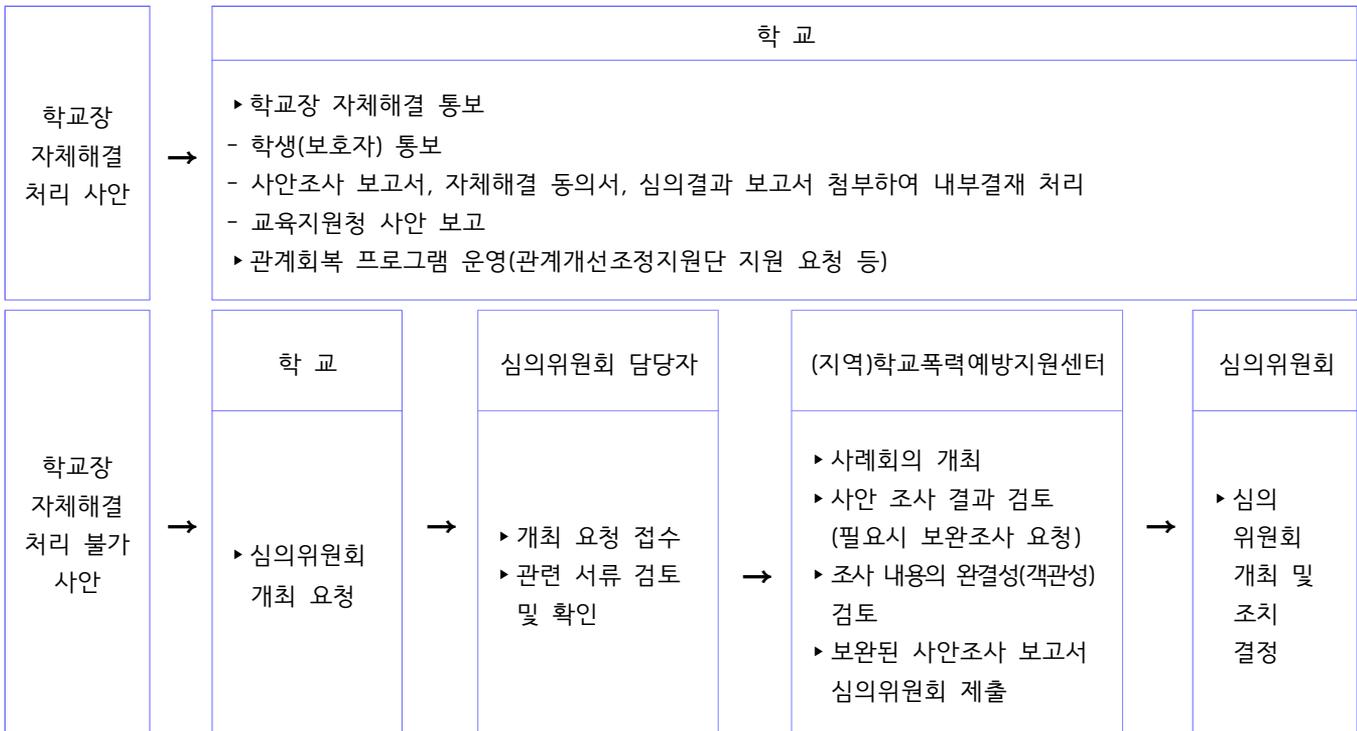
나. 사안조사 중점 파악요소

신체적 폭력	▶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 피해의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 욕설 / 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 명의도용, 폭력성 / 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다. 기관별 역할



라. 전담기구(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이후 절차



진로교육 -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 찾기!

< 주니어커리어넷에서 진로정보 찾아보기 >

1. 주니어커리어넷 www.career.go.kr/j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비회원가능)
2. 자녀의 발달단계 맞는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3.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여 다양한 진로 정보를 찾아본다.

[탐색활동 사례]

▶ 나를 알아보아요

- * 진로 흥미 탐색 및 진로개발역량 검사 실시하기
- * 진로카드를 이용한 나의 관심 직업은?

▶ 진로정보를 찾아봐요

- * 직업탐색- 라이어를 찾아라!
- * 스토리텔링으로 찾는 미래사회의 직업은?

▶ 진로 고민이 있어요

- * 진로 탐험대로 출동~
- * 진로퀘스트 시작하기

< 커리어넷에서 진로정보 찾아보기 >

1. 커리어넷 www.caree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2.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여 다양한 진로 정보를 찾아본다.
3. 직업정보> 직업백과를 통한 다양한 직업 탐색하기
진로상담> 상담신청을 통한 진로 상담전문가와와의 진로 고민 해결하기

		
<p><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p>	<p><주니어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jr/</p>	<p><한국 잡월드> www.koreajobworld.or.kr</p>

선행교육 예방 정책 안내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 공교육정상화법의 연혁**
- ✓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395호, 2014. 3. 11., 제정]
 - ✓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일부개정]
 -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선행교육 예방 정책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등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서 편성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고사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삼급학교 (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성화중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

IV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01. 대학 입학전형(논술·적성·구술시험 등)의 선행 출제 해소

- ✓ 2016년에 비해 2017~2020년에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대학의 비율과 수가 현저히 감소

02.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 외고·자사고 등 일부 중·고교 입학전형의 선행 출제·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의 위반 건수는 2016년에 23건에서 2019년에 5건으로 감소

03.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 ✓ 학원 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393건, 2017년 234건, 2018년 24건, 2019년 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0),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V 선행교육 예방 정책,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A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4
선생님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는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등 상사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NO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YES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YES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회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YES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익산초등학교 학사일정

2025.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1/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1) 삼일절, 개교기념일
 (3) 삼일절 대체휴일
 (4) 시업식, 입학식
 (4-7) 학교평화교육주간
 (10-14) 진단평가(2~6학년)
 (17) 1~2학년 교통안전교육
 (18) 3~4학년 교통안전교육
 (19) 5~6학년 교통(자전거)안전교육
 (20) 교육계획설명회
 (24-28) 학부모상담주간
 (26) 진로적성검사(5,6학년)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

(2) 3학년 교통안전교육
 (21) 장애인식개선교육
 (21-25) 과학의 달 행사주간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재량휴업일
 (5)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 대체휴일
 (28) 지진대피훈련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

(5) 학부모 참여수업
 (6) 현충일
 (9-10) 외국어교육센터입소(5학년)
 (24)이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30-7.4) 수상안전교육
 (3-1,2, 오전)
 (3-3, 오후)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8

(6.30-7.4) 수상안전교육
 (3-1,2, 오전)
 (4-1,2 오후)
 (7-11)수상안전교육(3-3,오전)
 (24) 여름방학식
 (25-31) 여름방학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1-19) 여름방학
 (15) 광복절
 (18) 2학기 교육과정 준비의 날
 (20) 개학식
 (20-22) 학교평화교육주간
 (29) 2학기 학부모상담안내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

(1) 2학기 학부모 상담 안내
 (2) 1~2학년 자전거안전교육
 (3) 3~4학년 자전거안전교육
 (4) 5~6학년 자전거안전교육
 (18-19) 6학년 테마식현장체험
 (23) 체험중심안전교육
 (30) 장애인식개선교육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건강놀이한마당
 (3) 개천절
 (6) 추석 (7) 추석연휴
 (8) 대체휴일
 (9) 한글날 (10) 재량휴업일
 (14) 3학년 현장체험학습
 (16) 5학년 현장체험학습
 (17) 1,4학년 현장체험학습
 (24) 2학년 현장체험학습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0) 합동소방훈련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4) 이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

(11) 선거소견발표회(3~5학년)
 (12) 2026학년도 전교학생회장단선거
 (25) 성탄절

2026.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새해 첫날
 (6) 종업식(1-5학년)
 (6) 졸업식(6학년)
 (7~31) 겨울방학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8) 겨울방학
 (17) 설날
 (16-18) 설연휴
 (23-25) 교육과정세움주간
 ※ 2학기 시작일 8.20
 ※ 방학일수: 26일/53일

수업 일수	1학기	2학기	총
	98	92	190

* 본 학사일정은 학교교육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일(변동되는 학기의 방학일)을 하루 연기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